제3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교 통 정 책 과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연월일	2026. . .
발 의 자	김춘남 의원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춘남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6. . .

발 의 자 : 김춘남 의원(1명)

찬 성 자 : 김정미·김종화·김효석·박윤경 소진혁·신용하·양진오·유승헌 이정호·이탕모·임명섭·장미경 장진호 의원(13명)

1. 제안이유

경상북도 내에서 구미시의 치안지표가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으므로 우발상황시 신속한 출동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치안만족도를 개선하고자 하며, 상위법 개정에 따른 기계식 주차장치의 설치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안 제13조의5)

나. 부설주차장의 기계식주차장치 설치기준(안 제14조제3항)

다.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이용객 주차요금 감면(별표 2)

3. 조례안: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주차장법」 제19조의5

2)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나. 부서검토: 교통정책과 의견제출(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

라. 기　　타: 신·구조문대비표(붙임)

구미시 조례 제 호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13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5(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①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관할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범죄다발지역, 상가 밀집지역 등 순찰 거점 확보가 필요한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 할 때에는 이용자가 식별하기 쉽도록 전용주차구획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하며, 주민 등 일반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보조표지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행규칙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순찰차가 주차되지 않는 시간대에 순찰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허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점검하여 주차구획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1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19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주차장은 총 주차대수가 21대 이상인 주차장으로 정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9조”를 “제20조”로 한다.

별표 2 제1호의 비고란제1호에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1회 1시간 무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이용객 및 상인 ※ 시장이 별도로 지정·고시하는 인근 공영주차장에 한함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3조의5(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①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관할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범죄다발지역, 상가 밀집지역 등 순찰 거점 확보가 필요한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 할 때에는 이용자가 식별하기 쉽도록 전용주차구획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하며, 주민 등 일반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보조표지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행규칙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순찰차가 주차되지 않는 시간대에 순찰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허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점검하여 주차구획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14조(부설주차장 설치 대상 및 기준) ①·② (생 략) ③ 시행규칙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치의 비율은 설치 대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주차대수가 20대 이하인 경우: 설치불가 2. 주차대수가 21대 이상 300대 이하인 경우: 주차대수의 70퍼센트 이하 3. 주차대수가 300대를 초과하는 경우: 주차대수의 30퍼센트 이하	제14조(부설주차장 설치 대상 및 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9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주차장은 총 주차대수가 21대 이상인 주차장으로 정한다.
제26조(보조금의 회수) 시장은 제19조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 3. (생 략)	제26조(보조금의 회수) ----- 제20조----------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주차장법」

제19조의5(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①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는 지역실정이 고려된 구역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대수
2.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
3. 삭제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①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지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 주민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
2.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으로서 인근 이용자의 화물자동차를 위한 경우
3.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 및 외교관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위한 경우

5.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를 위한 경우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전용주차구획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용주차구획에 주차가 허용되는 자동차(이하 이 항에서 “전용주차자동차”라 한다)가 주차되지 않는 시간대에 전용주차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허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장 등의 상인 및 고객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였거나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시장이나 상권활성화구역에 있거나 이웃한 것만 해당한다)을 주로 사용하는 경우 「주차장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대상이 되는 주차장 및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장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를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개설자 또는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검 토 의 견 서

부서명: 교통정책과

조 례 명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조례 제(개)정의 필요성 및 입법 취지 타당성

◦ 구미시 최근 3년 행정안전부·경찰청 치안지표 하위
◦ 상위법 개정에 따른 기계식 주차장치 설치기준 완화
◦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주차 이용 협조

□ 관계법령 및 상위법령 저촉 여부

◦ 관련법령
▪「주차장법」 제19조의5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 상위법령 저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기존 조례 및 유사 제도와의 중복·충돌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조례 시행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영향

◦ 기대효과
▪ 긴급출동 골든타임 단축 및 범죄 예방 분위기 조성
▪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이용 활성화 및 주변 불법주정차 감소
◦ 소요예산 : 연 27백만원 미만 추정
▪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조성비용 2백만원
▪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감면비용 연 25백만원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문 제 점 : 공영주차장 수입 일부 감소

□ 조문별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검토의견

◦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에 주차지원으로 이용 활성화 기대

[별지 제2호서식]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안 제13조의 5)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조성비용

◦ (안 별표 2)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이용객의 주차요금 감면 비용

2. 미첨부 근거 규정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조성비용 2백만원 추정(개소당 1백만원, 2개소 설치)

◦ 연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금액이 연간 25백만원 추정

- [산출근거] 구미역 후면광장 공영주차장 이용객 중 금리단길 이용하고 상가에서 웹할인 적용받은 비율인 3.6%를 연간 일일권수입에 적용

*2025년도 기준

구분	대상주차장	연간 일일권수입(A)	연간 감면금액(B) (웹할인 이용금액)	비율(B/A)	비고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인근 공영주차장 (반경100m 내)	① 구미역후면광장 ② 구평동 ③ 원평구획가로 ④ 단계천 ⑤ 공단동 ⑥ 금오산 ⑦ 새마을중앙시장 ⑧ 상생플랫폼 ⑨ 인동시장 ⑩ 봉황시장	698,781천원	**25,156천원**	3.6%	금리단길 비율 적용
금리단길	구미역 후면광장	154,983천원	5,540천원	3.6%	비교대상 (기준)

4. 작성자

◦ 교통정책과 주차시설팀 김선혁(☎480-6262)